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토양오염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신설 〉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069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토양오염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신설	2
※ 참고자료	7
1. 토양오염 정화 체계도	7

I. 제안경위

2025년 2월 11일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등 정화책임자에게 오염된 토양의 개선사업의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하는 등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화책임자의 경우 비용을 핑계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거나, 정화 작업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어 오염된 토양으로 인한 피해상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습적으로 토양오염 관련 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제고하려 합니다(안 제3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토양오염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신설

개정안은 토양오염 관련 이행조치 명령 미이행, 오염토양의 투기 또는 매립 등 토양오염 관련 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에 대해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30조의2(가중처벌)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양오염 관련 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 <u>1.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u> <u>2.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u> <u>3. 제14조제3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현행	개정안
	4.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토양정화, 방지사설의 설치, 특정오염시설 사용중지, 토양오염물질 사용제한 등의 이행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이행기간 내 해당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명령 미이행 또는 위반행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방지사설의 설치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상 토양오염 관련 범죄의 처벌 수준]

구분	이행조치 명령				금지행위
조치사항	토양정화	방지사설의 설치 등	특정오염시설 사용중지	토양오염물질 사용제한 등	투기, 매립 금지
근거조항	제11조제3항제14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5조의4제1호
처벌수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참고로 토양정화에 대한 이행조치를 명령받았음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미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화책임자를 고발¹⁾하는 등 2025년 3월 말 기준 정화명령을 미이행하여 고발된 건수는 총 36건으로 나타났다.

[정화명령 미이행에 따른 고발건수(2025년 3월 기준)]

위반조항	고발 건수	합계
제11조제3항(토양정화)	12건	36건
제14조제1항(방지시설의 설치 등)	9건	
제15조제3항(토양오염물질 사용제한 등)	15건	

자료: 환경부

명령을 받은 일부 정화책임자가 정화비용을 이유로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거나 정화작업의 중단 및 재개를 반복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오염토양 정화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연되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토양오염 관련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감을 제고하고 오염토양을 적기에 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²⁾, 「노인복지

1) 중부일보, “인천 연수구, ‘송도 테마파크 부지 오염’ 부영주택 3차 경찰 고발”, 2025.2.2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³⁾,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⁴⁾ 등에서도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다만, 상습적이라는 표현은 해석에 따라 모호할 수 있어 법률 적용에 있어 일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상습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형법」 제35조⁵⁾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누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토양오염 관련 범죄를 범한 이후 3년 이내 또는 4년 이내⁶⁾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대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노인복지법」 제59조의2(가중처벌) 상습적으로 또는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55조의4제1호의 죄를 범한 경우 각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4)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① 도시숲등과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한 자

3. 도시숲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을 설치·방치하거나 점유한 자

③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5)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6)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8제2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최대 4년까지 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한편, 개정안 시행 이후 토양오염 관련 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함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사 입법례⁷⁾를 참고하여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가중처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가중처벌 조항 신설 전 범죄를 저지른 자가 조항 신설 이후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적용례를 마련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533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제19307호, 2023.3.28.>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8)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제19158호, 202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이 법 시행 전에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참고 1

토양오염 정화 체계도

